

# Zoom-in Trade



- ▶ COVER STORY:  
관세환급제도에 미치는  
FTA 협정의 영향..... 1
- ▶ FTAs NEWS:  
한-EU FTA 2011년 7월 발효!  
준비되었나요? ..... 2
- ▶ VOICES FROM THE FIELDS:  
해관감관화물의  
통관절차 ..... 3
- ▶ 관세무역관련 법령 변경  
소식 ..... 4
-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 5
- ▶ WHERE IS GRACE CHANG?:  
*Hoping for the Best,  
Prepared for the Worst..* 7
- ▶ ABOUT WRITERS ..... 7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LEADERSHIP TOWARD INNOVATION & CREATIVITY

관세환급제도란 수입 시에 국가에 납부한 관세등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수출용원재료에 적용되는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은 우리나라에서는 1974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유럽연합(EU)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관세환급에 대한 제한은 한-EU FTA 협정에만 있고 다른 나라와의 FTA 협정에는 관세환급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번호에서는 관세환급과 FTA 협정의 관세환급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 관세환급제도에 미치는 FTA 협정의 영향



### 1. 한-EU FTA 협정상의 관세환급

-한국과 EU FTA 협상에서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관세환급은 현행제도를 계속 유지하되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특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한도를 제한할 수 있는 관세환급세이프가드조치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1-1.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의 기본원칙으로 상대국 동종제품과의 경쟁조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sourcing pattern)의 변화가 입증될 경우 발동 가능하다.

-구체적 요건으로서는 1)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2)최종재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대(對)세계 수입증가율(FTA 비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에 국한)이 최종재의 상대국 수출증가율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이다.

-경감요인으로는 역외산 원자재의 수입 증가가 국내 소비 증가 등 상대국 수출 용도 이외의 수요에 기인한 경우이다.

- 또한 상대국 동종제품과의 경쟁 조건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할 수 있다.

#### 1-2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절차

관세환급 세이프가드 발동절차로는 일방 당사국이 해당 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제한을 위한 협의(consultation)를 요청하며 양측간 이견이 있을 경우 한-EU FTA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패널 3 인으로 구성)하여 결정하며 패널에서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이 있다고 판정하면, 해당품목에 대해 환급되는 관세를 5%로 제한 한다. 예를 들면 현재 실행 관세율이 8%인 품목의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시 5%만 환급된다.

#### 1-3 관세환급제도의 향후 공동검토

또한 협정 발효 후 5년 후부터 일방 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세환급제도에 관해 공동으로 검토(review)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2. 국내법상 관세환급제도

국내에서의 관세환급제도에는 법령에 따라서 관세법상 환급과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있다.

#### 2-1. 관세법상 환급

관세법상 환급에는 과오납 환급(관세법 46 조) 과 계약상이 물품의 환급(관세법 106 조), 기타 탄력관세 잠정조치 후 본 조치시의 정산,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시 정산, 종합보세구역 판매물품의 관세환급, 지정보세구역 장치물품의 멸실 손상으로 환급등이 있으며 환급되는 관세는 수입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한다.

#### 2-2. 환급특례법상의 환급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을 수출물품을 제조하거나 원상태로 수출하였을 경우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환급되는 세종은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특세등이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환특법의 환급대상이 아니다. 환특법상의 환급방법에는 간이정책환급제도와 개별환급제도가 있다.

#### 2-2-1. 간이정책환급제도

직전 2년간 연간 환급액이 6억 이하인 중소기업이 간이정책 환급율표에 계기된 품목을 생산하여 수출한 경우 10단위 세변만 일치하면, 품명, 규격에

상관없이 수출금액 FOB 1 만원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되돌려 준다.

복잡한 서류없이 수출 신고필증등의 수출사실 확인서류만 있으면 되므로 간단한 절차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업체가 관할세관에 신청하여 지정을 받은 경우 수출신고 후 선적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환급신청이 접수되는 제도가 있다.

## 2-2-2 개별환급제도

수출 시에 수출물품 생산에 원재료가 얼마만큼

소요되었는지 파악하여 소요원재료에 대해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수출자에게 되돌려 준다.

환급금 계산이 정확하고 간이정액 환급율표가 적용될 수 없는 수출물품, 간이정액 환급율표에 표기 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대기업 및 간이정액 환급 비적용 승인업체의 수출물품에 적용된다.

환급 신청시 제출서류에는 환급신청서와 수출 신고필증, 소요량계산서와 수입 신고필증 (또는 납세분증)이 필요하며 소요량 산정방법에는 자율소요량 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는 환급업체에서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량을

자율적으로 산정하는 제도로서 6 가지 소요량산정 방법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환특법에는 있으나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에는 연산품 정액환급제도, 표준 소요량 제도, 환특세율 등이 있다.

##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정 두 석

[dschung@customsservice.co.kr](mailto:dschung@customsservice.co.kr)

## FTA News

# 한-EU FTA 2011 년 7 월 발효!! 준비되셨나요?

2011 년 5 월 4 일 한-EU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지난 2 월 17 일 유럽의회에서 한-EU FTA 동의안이 통과된 데 이어, 우리 국회에서도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EU FTA 의 2011 년 7 월 1 일 잠정발효를 위한 양측의 입법부 절차가 완료되었다.<sup>1</sup> 그러나 한-EU FTA 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련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을 두고 있어, 한-EU FTA 대비의 필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다.

그럼 우리기업들은 얼마나 한-EU FTA 대비를 하고 있을까?

## 1. 한-EU FTA 와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sup>2</sup>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 16 조, 제 17 조)

한-EU FTA 는 기존의 한-칠레, 한-EFTA, 한-미 FTA 와 같은 자율발급체제와는 달리 수출건별 6000 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對 EU 수출기업이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 2. 우리기업의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현황

그렇다면, 현재 우리기업의 한-EU FTA 인증수출자 인증 현황은 어떨까?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내 중소기업 중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10 개 중 1 개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역시 3 개 중 1 개 기업만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sup>3</sup>

상세히 살펴보면 ‘인증수출자’ 대상기업인 대기업 419 곳 중 117 곳만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EU 수출기업의 94.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상기업 7,787 곳 중 608 곳(7.8%)으로 사실상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sup>4</sup>

## 3. 인증의 어려움

그렇다는 이와 같이 우리 수출기업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현황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수출입 업체의 인식 부족

관세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7% 이상이 인증수출자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또한, 제도를 인지하고 인증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도입 후 1 년정도 밖에 되지 않은 인증 수출자 제도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EU 의 경우 지난 1975 년부터 인증수출자 제도를 시행해 대부분의 기업이 인증을 득한 상태이므로 현 상태로 한-EU FTA 가 발효되는 경우 국내 중소기업들은 EU 수출시 가격경쟁력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로 국내에 싸게 들어오는 EU 제품들과 경쟁해야 하는 이중부담에 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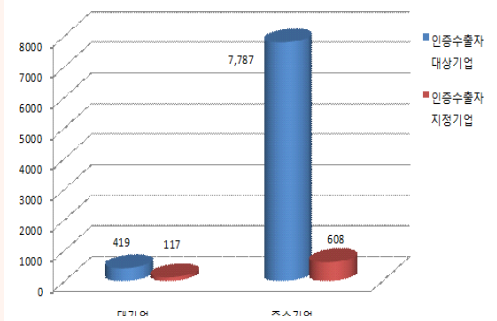
### (2)원산지(포괄)확인서 수취문제

대표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의 충족을 위해서는, 국내공급 원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율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국내공급업체로부터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또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공급업체의 공급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판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원재료 공급업체의 경우, 경제적 문제·지식 미비 등 여러가지 사유로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포괄)확인서의 발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 4. 한-EU 인증수출자 제도 인증률을 높이기

### 기업규모별 인증수출자 지정현황



< 관세청 자료 참조 (2011 년 5 월 8 일 기준)>

## 위해서는?

### (1)업체의 인식 전환

한-EU FTA 발효를 대비해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관련 교육 및 정부사업 등을 통해 EU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및 무료 컨설팅 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수출기관은 해당 교육과 컨설팅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EU FTA 를 대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업체 내 원산지 관리 전담 인력 구성

인증 수출자의 요건 중 ‘원산지관리 전담자의 지정·운영’ 요건이 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이를 기존인력에 부가업무로 부담시키는 경향이 있어, 원산지 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에서는 원산지관리 담당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원산지 판정, 증빙서류 보관, 원산지(포괄)확인서 발행 협력업체 관리 등의

| 업무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업체별 인증 수출자<br>담당기관 | 서울본부세관 FTA<br>집행총괄과                               | 6 개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 대구,<br>광주)<br>및 평택직할세관 |
| 품목별 인증 수출자<br>담당기관 | 6 개 본부세관(서울, 부산,<br>인천공항, 인천, 대구, 광주)<br>및 평택직할세관 |   |

<표 1>

제반업무를 전담시켜야 한다.

**(3)원산지(포괄)확인서 제도의 개선 및 지속적 교육 필요**

정부는 지난 1 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인해주는 '생산자

원산지 진술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sup>5</sup> 이와같이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해야하는 원재료 공급업체 중 상대적으로 FTA 지식이 부족한 영세한 업체도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와 선행하여 수출업체 외에도 국내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5. 원산지 인증수출자 관련 참고사항**

참고로, 관세청에서는 한- EU FTA 발효 대비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자 2011 년 5 월 9 일부터 인증심사기관을 표 1 과 같이 변경하였다.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지 아

[jachoi@customsservice.co.kr](mailto:jachoi@customsservice.co.kr)

1.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참조
2. 관세당국이 수출자가 원산지판정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사하여 인증하는 제도. 이는 업체별 인증 수출자와 품목별인증 수출자 제도로 구분된다.
3. 관세청 자료 참조(2011년 5월 8일 기준)
4. EBN 산업뉴스, 민중의 소리 등 참조
5. 한국경제 TV 와우뉴스 참조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 특집! 기획 연재 시리즈]

# ③ 해관감관화물의 통관절차

해관감관화물이란 국내반입 시점부터 해관수속처리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의 수입화물과 해관신고 시부터 출국 때까지의 수출화물, 그리고 일반수출입화물, 보세화물, 특정감면세화물, 일시수출입화물을 포함하여 과경화물과 전문화물, 통운화물 등 해관감관을 받아야하는 화물 및 기타 해관수속이 종결되지 않은 화물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의 화물들은 각기 화물종류와 성격에 따른 상이한 통관절차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적인 공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관감관화물 전체에 대한 통관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해관감관화물의 종류와 성격**

해관감관화물은 화물의 수출입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일반수출입화물**

일반수입화물과 일반수출화물을 말한다. 일반 수입화물은 해관수속을 마치고 국내생산에 투입되거나 소비영역에 들어와 유통되는 수입화물을 말한다. 일반수출화물이란 해관수속을 마치고 계속해서 외국에 나가 생산과 소비영역에 유통되는 수출화물을 말한다.

**2) 보세화물**

해관의 승인을 받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태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장치·가공·조립 후 다시 외국으로 반송되는 화물을 말한다. 보세가공 화물과 보세물류화물이 있다.

**3) 특정감면세화물**

해관이 법률에 의거 면세수입을 허가한 특정 지구나 특정기업에 사용되거나 특정용도를 가지고 있는 화물을 말한다.

**4) 임시수출입화물**

임시수입화물과 임시수출화물을 말한다. 임시 수입화물이란, 해관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제공하고 수입지 경내에서 사용 후 원상태로 재수출되는 화물을 말하며, 임시수출화물이란, 해관의 승인을 거쳐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지 외국에서 사용 후 원상태로 재수입되는 화물을 말한다.

**5) 기타 수출입화물**

외국에서 운송되어 중국 국내를 통과한 후 계속하여 외국으로 운송되는 화물 및 기타 해관 수속을 밟지 않고 수출입하는 화물을 말한다. 해관은 각종 감관화물의 서로 다른 요구사항에 따라, 상응하는 해관감관제도를 가지고 있다.

**2. 해관감관화물의 통관절차**

해관감관화물의 통관절차란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운송수단 책임자, 물품소유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규정에 따라 화물, 물품, 운송수단의 수출입 및 관련된 해관사무를 처리하는 순서와 차례를 말한다. 다만, 여기서 언급하는

통관절차는 수출입화물에 한정한다. 화물 수출입은 서류심사(審査) → 검사(査驗) → 부과징수(徵稅) → 면허(放行) 등 4 가지의 해관업무단계를 거쳐야 한다.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절차에 따라 상응하는 수출입신고 → 검사협조 → 세비납부 → 화물수령 또는 운송 등 수속을 밟아야만 비로소 화물을 수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만으로는 해관의 모든 수출입화물에 대한 실질적인 감관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예를 들어 가공무역의 원재료 수입의 경우, 해관은 사전준비(備案)를 요구한다. 따라서 신고와 서류심사단계에서 위에서 말한 업무를 완수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전에 처리해야할 한 단계가 더 있다. 또한 만약에 상술한 수입원재료로 완성품을 가공한 후 수출하게 된다면 역시 면허와 화물운송으로 출국 시 모든 해관수속을 끝마쳤다고 할 수 없다. 반드시 정산종결(核銷結案)한 후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관이 수출입화물에 대하여 감관을 실시하는 전 과정을 살펴볼 때, 통관절차는 시간의 전후에 따라 전기단계 → 수출입단계 → 후속(사후)단계 등 3 단계로 나눌 수가 있다.

### 1) 전기단계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관요구에 따라 화물이 수출입하기 전에 해관에 다음과 같은 준비수속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① **보세가공화물:** 보세가공화물의 수입 전에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가공무역 준비수속을 하여야하며, 가공무역전자장부와 전자화수책 개설을 신청하거나 또는 가공무역 종이수책을 신청하여 수령해야 한다.

② **특정감면세화물:** 특정감면세화물의 수입 전에 수입화물 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의 감면세 준비와 심사비준 수속을 하여야하며, 감면세증명을 신청하여 수령해야 한다.

③ **임시수출입화물:** 임시수출입화물의 수출입 전에 수출입화물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화물 임시수출입 준비신청 수속을 하여야한다.

④ **기타 수출입화물:** 출료가공(出料加工) 화물의 경우에는 출료가공 화물의 수출 전에 수출화물 송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출료가공의 준비수속을 하여야한다.

### 2) 수출입단계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해관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관요구에 따라 화물이 수출입할 때, 해관에 수출입신고 → 검사협조 → 세비납부 → 화물수령 또는 운송 등 수속을 하는 과정을 말한다.

① **수출입신고:** 해관의 규정된 기한 내에 해관에서 규정한 형식에 따라 해관에 수출입화물

정황을 보고하고, 해관으로 하여금 그 신고한 내용에 따라 수출입화물의 면허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이다.

② **검사협조:** 수출입신고 화물에 대하여 해관이 검사를 결정할 경우, 수출입화물의 송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은 검사현장에 도착하여 해관요구에 따라 화물의 이동 및 개포장 등 화물검사에 협력해야 하는 절차이다.

③ **세비납부:** 해관에서 발급한 세비납부고지서를 받은 후에 해관에서 지정한 은행에 세비를 납부하는 것으로서, 은행을 통하여 관련 세비를 해관의 전문계정에 납입하는 절차이다.

④ **화물수령 또는 적재운송:** 화물수령은 해관에서 수입면허를 결정된 후에 면허인장을 날인한 수입화물반출허가증 또는 해관전산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면허통지서를 근거로 수입화물을 수령하는 절차이다. 화물의 적재운송 즉 수출화물의 적재운송은 해관에서 수출면허를 결정된 후에 면허인장을 날인한 수출화물반출허가증 또는 해관전산시스템을 통해 발송한 면허통지서를 근거로 항구나 공항, 터미널 및 기타 관련기관에 수출화물의 적재운송을 통지하는 절차이다.

### 3) 후속단계

해관의 수출입화물에 대한 감관요구에 따라 화물을 수출입할 때, 장치, 가공, 조립, 사용, 유지보수 후에 규정된 기한 내에 규정된 요구에 따라 해관에 상술한 수출입화물의 정산(核销), 종결(销案), 감관의 해제 등을 신청하는 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4 가지 단계의 업무를 포함한다.

① **보세가공화물:** 규정된 기한 내에 정산 신청한다.

② **특정감면세화물:** 해관감관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관감관기간 내에 해관의 승인을 받아 판매, 양도, 반송, 폐기한 경우에는 해관에 감관해제를 신청한다.

③ **임시수출입화물:** 규정된 기한 내에 또는 해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수출입허를 연장한 경우에는 만기 전에 재수출하거나 정식으로 수입신고하고, 그 후에 종결 신청한다. 임시수출입화물은 규정된 기한 내에 또는 해관의 승인을 받아 임시수출입허를 연장한 경우에는 만기 전에 재수출하거나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난 후에 종결 신청한다.

④ **기타 수출입화물(출료 가공화물과 수리화물, 일부 임대화물 등):** 규정된 기한 내에 종결처리를 신청한다.

관세청

부산국제우편세관

세관장 임 창 환

[chron21@customs.go.kr](mailto:chron21@customs.go.kr)

## 관세무역관련법령 변경 소식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물품에 대한 내용과 별표 1 과 별표 2 의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 □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세법」제 71 조에 따르면 원활한 물자수급을 위하여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거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등의 국내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에 한정하여 100 분의 40 의 범위의 율(率)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밀, 옥수수 등 총 99 개 품목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 생필품의 가격안정을 통한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 및 구제역과 국제 원자재가격상승 등의 영향으로 물자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이 상승한 닭고기, 크림치즈 등 9 개 품목을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하였다.

또한 현재 할당관세 적용 중인 밀가루 등 3 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적용세율을 추가로 인하하였으며,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그 한계수량을 늘리는 등 경제변화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 2011 년 6 월 30 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별표 1)

별표 1 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2 란 앞에 0203.1 란 및 0203.19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203.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3.19** 기타 - 삼겹살 0% 2 만 메트릭톤

별표 1 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8 란 앞에 0401 란, 0401.30 란, 0406 란, 0406.10 란 및



0406.90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0401.3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 분의 6 을 초과하는 것 - 가공유크림으로서 냉동크림은 제외한다. 0% 1 천 5 백메트릭톤

**0406 치즈와 커드**

**0406.10**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한)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 크림치즈 0% 1천 2백메트릭톤

**0406.90** 기타 치즈 - 가우더 치즈 0% 1천메트릭톤

별표 1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101.00란을 삭제한다.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105란 앞에 0102란 및 0102.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102 소**

**0102.90** 기타 - 1. 젓소 0% 1만두

□ **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 (별표 2)**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401란 앞에 0207란, 0207.1란, 0207.12란 및 0207.14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207** 가공류의 육과 식용설육(제 0105호의 가공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0207.1** 닭의 것

**0207.12**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 중량이 550그램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0% 5만메트릭톤

**0207.14** 절단육 및 설육(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 1. 절단육 - 닭다리, 닭가슴 및 닭날개 0%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714.10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0714.10** 매니옥(카사바) - 2. 건조한 것  
가. 칩 - 주정용 5% 10만메트릭톤(\*)

나. 펠리트 - 사료용 1% 90만메트릭톤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002.00란 앞에 0806란 및 0806.2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0806.20** 건조한 것 8% 수입전량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105란 앞에 1101.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01.00** 밀가루 또는 메슬린 가루

1. 밀가루 0% 수입전량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518.00란 앞에 1515란 및 1515.9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15**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버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90** 기타

2. 기타 - 미강유 0% 수입전량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1806.20란 및 2207.10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806.20** 기타 조제식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 슬래브상 또는 바상인 것과 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상, 페이스트상, 분말상, 입상 또는 그 밖의 벌크상의 것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것

1.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0% 수입전량

2.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50퍼센트 이상인 것) 0% 5천메트릭톤

**2207.10**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 조주정 0% 16만킬로리터(\*)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5403.3란 앞에 5403.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03.1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의 것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5403.33란 앞에 5403.31란 및 5403.32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03.31** 비스코스레이온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회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5403.32** 비스코스레이온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회 초과인 것만 해당한다) 0% 수입전량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최 지 아

[jachoi@customsservice.co.kr](mailto:jachoi@customsservice.co.kr)

## US Customs Valuation Rulings @ 미국 관세청 예규(Rulings)로 알아보는 관세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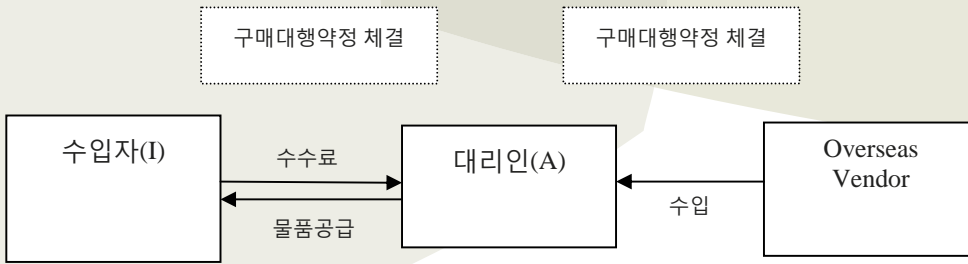
### EDITORIAL NOTE

신한관세법인의 관세사들은 2주에 한번씩 모여 미국 관세청의 예규(Rulings)를 스터디하고 있다. 미국 Rulings는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자주 인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중요성과 연구의 실익이 크다.

지난해부터 다수의 사례를 연구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함께 공유할 만한 중요한 케이스를 선별하여 소식지에 게재해 나가고 있다. 이번 소식지는 Rulings 스터디의 조연자인 정정식 관세사께 조언을 받아 해당 Ruling 담당자의 글을 실는다.

# 구매수수료 해당 여부(HQ548188)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가격)에 법정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이다. 거래가격은 당사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더라도 그러한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실제지급가격의 범위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쟁점인 사례를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 □ 거래사실

1. 구매대리인(A)는 수입자(I)로부터 받은 특별한 생산주문에 대하여 I의 상품이 First Cost Program 하에서 공급될 지 또는 GLC 프로그램 하에서 공급될 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2. I가 상품조달을 A에게 지시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서비스로 시행될 것이냐 하는 방식의 문제는 전적으로 I가 결정함. A는 그 서비스 방식을 바꿀 권한이 없음.

3. 이미 제출된 관련 협정들을 포함해서 여러 부분에서 A에 대한 I의 통제력이 명확하게 드러남.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음.

- 1) A는 "Principal, 즉 I의 지시로" 협상함
- 2) A는 "지시를 받은 때", "I의 이름으로", "I의 계정으로" 생산자에게 주문함
- 3) A는 "사전에 I에게 특별히 지시 받지 않는 한 I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떤 계약이나 책임과 의무가 수반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 4) A는 "I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선적을 명함
- 5) I가 A에게 비용청구 등에 대해 "지시함"
- 6) A는 I가 "요청 시(upon request)" 또는 "요구하면(as principal may require)" 상품

관련정보(standards information), 지적재산권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함

- 7) A는 생산자와 별도의 특수관계가 없음
- 8) A는 I가 지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생산자에게 어떤 원자재도 공급할 수 없음.

4. A의 진행절차는 진정한 구매대리인의 행위와 일치한다고 주장함.

5. I는 손상·불량 상품에 대한 A의 클레임 정책을 귀속되지 않음.

6. 구매 대행 약정과 관련한 수입물품 클레임 처리 정책은 I가 원하는, 대리인으로서 클레임에 대한 협상과 조정 역할을 충분히 수행케 하기 위한 A의 서비스 범주를 이미 명시하고 있음.

7. 그 약정에 따르면 A가 클레임을 다루길 바라든 바라지 않든 손상되거나 불량인 상품에 관해 I 역시 판매 자에게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음. 참고로 이는 구매 대행 약정의 PARAGRAPH 9 ©에 I가 판매 자에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음.

8. 책임의 범주는 서비스 상태에 대한 것임. 서비스 상태에 대해 A의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I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음.

9. A는 손상·불량 상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그 이유는 A는 상품의 판매자가 아니고 이런 책임을 진다는 것은 구매대리인의 역할과 모순되기 때문임.

### □ 쟁점(Issue)

수입자 I와 그의 회사가 구매대리인 A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쟁점검토(Law and Analysis)

#### 1. 법적근거

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최우선의 방법은 거래가격 방법임. 거래가격이란,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함.

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는 총 금액을 말하며, 진정한 구매수수료는 이 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함.

다. 진정한 구매수수료 여부는 각 사안의 관련요소에 따라 결정해야 함. 진정한 구매대행관계 및 대리인에게 지급된 금액의 진정한 구매수수료 해당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 대리인은 수입자를 대신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독립된 판매자로서 행동하거나 생산자를 대표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됨. 그 관계규명의 결정적 요인은 구매자가 지불하는 수수료가 판매자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임.

라. 물품수배·검사·포장·선적준비 및 구매자를 대리하여 대금지급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서 구매자가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임.

#### 2. 관련 판례 및 예규

##### 가. Jay-Arr Slimwear (1988)

대행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은 대리인에게 위임된 일과 관련하여, 대리인을 통제할 수 있는 수입자의 권리임.

#### 나. New Trends Inc. (1986)

대리인에게 부여된 재량의 정도 역시 고려되어야 함. 또한, 법원은 해당 판례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조사 함.

- 1) 대리인의 행위가 주로 본인(수입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가?
- 2) 대리인이 선적과 화물취급 및 그에 따른 비용에 책임을 졌는가?
- 3) 상업송장에 사용된 언어가 당사자와 대리인 간의 관계를 잘 반영하는가?
- 4) 대리인이 물품의 손실, 파손 등의 위험을 부담하였는가?
- 5) 대리인이 제조자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되어 있었는가?

#### 3. 쟁점검토

가. A가 I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형적으로 진정한 구매대리인에 의해 수행되는 것임. 구매대행약정의 조건에 따르면 A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I의 지시와 통제하에 수행됨.

나. 이는 구매대행약정서의 다양한 조항에 의해 규명됨.

예를 들어, 약정서는 A가 "Principal 즉, I의 지시에 따라" 그리고 "지시된 때", "I의 이름과, I의 계정으로" 판매자에게 주문을 한다는 것을 규정함.

다. A의 중요한 역할은 구매대리인의 소임을 다하여 ("A는 본인의 지시하에 본인을 위한 가장 적합한 가격으로 협상할 것을 조력한다"는 조항에 의거) I를 위해 최적가와 최고품질을 찾는 것임.

라. HRL 548163에 의하면 A는 실질적으로 구매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I가 A에게 지불한 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고, 따라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 됨.

#### □ 결정(Holding)

제시된 정보에 따르면 A는 구매대리인이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I가 A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진정한 구매수수료에 해당함.

신한관세법인

관세사 신 성 훈

[shshin@customsservice.co.kr](mailto:shshin@customsservice.co.kr)

(※예규 원문은 아래 링크 - 공식사향 참고)

<http://www.customsservice.co.kr>

WHERE IS GRACE CHANG?

Stockdale Paradox.. Hoping for the Best, Prepared for the Worst



장승희

대표 관세사

베트남 전쟁 당시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던 병사들을 8년간 이끌며 최대한 많은 포로들이 살아 돌아 갈 수 있도록 만든 스톡데일 장군이 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Stockdale Paradox 라고 불립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음과 동시에 혹독한 현실을 직시하며 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라" 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기적적으로 뚫고 나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지만 자만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OECD 의 한국 GDP 성장을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것과 동시에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대폭 상승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세계 최대의 휴대 전화 제조회사로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던 Nokia 의 몰락은 최고의 순간에서 자만하며 최악을 대비하지 못한 전형적인 사례로 전세계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달 cover story 는 '관세환급제도에 미치는 FTA 협정의 영향' 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적용되는 환급특례법상의 환급제도는 일부 지역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인정하지 않기에 한-EU FTA 협정에 있는 환급관련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한-EU FTA 협정이 마침내 7 월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 혜택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수출업체가 대비를 해야 할 사항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가 있습니다. 유럽 등에서는 이미 시행되어 정착되었던 제도입니다. 원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확인서를 받는 것,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행, 기록, 보관 등등 및 국내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는 등 많은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인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과의 교역량증가로 중국에서의 수출입 통관절차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 중국에서의 통관절차에 대하여 차근차근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리즈로 연재되고 있으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호의 관세평가는 가산요소의 하나인 수수료와 중개료 중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대한 사례입니다.

아름다운 신록과 향기로운 아카시아 내음이 마음을 들뜨게 하는 계절입니다. 산에는 철쭉꽃이 만발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름다운 산과 들만 바라보며 현실에 눈을 감아서도 안되겠지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현실주의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순간에 자만하지 않고 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직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능력과 조직의 경쟁력을 키우며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름다운 5 월! 행복하세요~~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Grace Chang*

ZOOM-IN TRADE 를 소개하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좋은 정보를 친구와 나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Zoom-in Trade"를 친구들에게 소개하세요. 이메일 ([shinhan@customsservice.co.kr](mailto:shinhan@customsservice.co.kr)) 이나 전화(02-542-1181)로 동료분의 이메일을 남기시면 줌-인트레이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센스 있는 친구가 되는 법!! 참 쉽죠?



ABOUT WRITERS

COVER STORY -

관세환급제도에 미치는 FTA 협정의 영향



정 두 석 관세사 ([dschung@customsservice.co.kr](mailto:dschung@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통관 3 팀
- 기업심사, 관세무역 컨설팅 전문 자동차산업, 화학산업 전문 컨설팅
- 前) 시바 스페셜티 케미칼스 코리아
- 前) 기아자동차
- MBA, BSCM(CPIM)

FTA News-/ 관세 법령 변경 한-EU FTA 2011 년7 월 발효!! / 관세법 및 관세법 시행규칙등



최 지 아 관세사 ([jachoi@customsservice.co.kr](mailto:jachoi@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연 FTA 통관 실무 및 비즈니스 모델
- FTA Team

Voices From The Fields- 중국기획연재시리즈⑧ 해관감관화물의 통관절차



임 창 환 세관장 ([chron21@customs.go.kr](mailto:chron21@customs.go.kr))

PROFILE

- 現)부산국제우편세관장
- 現)중국관세무역연구회 간사장
- 前)복단대학 상해물류 연구원 초빙학자 파견
- 前)배재대학교 무역학과 겸임교수

US Rulings 연재③ 구매수수료의 해당여부



신 성 훈 관세사 ([shshin@customsservice.co.kr](mailto:shshin@customsservice.co.kr))

PROFILE

- 신한관세법인
- 서울본사 컨설팅 본부
- AEO Team 팀장
- 한국관세사회 AEO 인증 가이드북 발간 참여
- 웅진패스원 강사 관세평가